

#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

거주자 성명		생년월일	
근무처 명칭		사업자등록번호	- - -

## 1.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

공제대상자					신용카드등 사용금액										
① 내·외국인 구분	② 관계	③ 성명	④ 생년월일	자료구분	⑤-1 소계 (⑥+⑨+⑫+⑯+⑯+⑰+⑲)	⑥신용카드 (3월)	⑨직불· 선불카드등 (3월)	⑫현금 영수증 (3월)	⑯도서공연 등 사용분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) (3월)	⑯도서공연 등 사용분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) (4~7월)	⑯전통시장 사용분 (3월)	⑯대중교통 이용분 (3월)			
					⑤-2 소계 (⑦+⑩+⑬+⑯+⑯+⑰+⑲)	⑦신용카드 (4~7월)	⑩직불· 선불카드등 (4~7월)	⑬현금 영수증 (4~7월)	⑯도서공연 등 사용분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) (4~7월)	⑯도서공연 등 사용분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) (4~7월)	⑯전통시장 사용분 (4~7월)	⑯대중교통 이용분 (4~7월)			
					⑤-3 소계 (⑧+⑪+⑭+⑯+⑯+⑰+⑲)	⑧신용카드 (그 외)	⑪직불· 선불카드등 (그 외)	⑭현금 영수증 (그 외)	⑯도서공연 등 사용분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) (그 외)	⑯도서공연 등 사용분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) (그 외)	⑯전통시장 사용분 (그 외)	⑯대중교통 이용분 (그 외)			
국세청 자료															
그 밖의 자료															
국세청 자료															
그 밖의 자료															
국세청 자료															
그 밖의 자료															
국세청 자료															
그 밖의 자료															
⑤-1 합계액															

## 2.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

②신용카드 사용분(3월) 공제 금액 (⑥×30%)	②신용카드 사용분(4~7월) 공제금액 (⑦×80%)	②신용카드 사용분(그 외) 공제금액 (⑧×15%)	⑦직불카드등 사용분(3월) 공제 금액 (⑨+⑫) × 60%	⑧직불카드등 사용분(4~7월) 공제금액 (⑩+⑯) × 80%	⑨직불카드등 사용분(그 외) 공제금액 (⑪+⑭) × 30%	⑩도서·공연등 사용분(3월) 공제 금액 (⑯×60%)	⑪도서·공연등 사용분(4~7월) 공제금액 (⑯×80%)	⑫도서·공연등 사용분(그 외) 공제금액 (⑯×30%)
⑯전통시장 사용분(3월) 공제 금액 (⑯×80%)	⑯전통시장 사용분(4~7월) 공제금액 (⑯×80%)	⑯전통시장 사용분(그 외) 공제금액 (⑯×40%)	⑯대중교통 사용분(3월) 공제 금액 (⑯×80%)	⑯대중교통 사용분(4~7월) 공제금액 (⑯×80%)	⑯대중교통 사용분(그 외) 공제금액 (⑯×40%)	⑯공제제외금액 계산		
						⑯-1 총급여	⑯-2 최저사용금액 [(⑯-1) × 25%]	⑯-3 공제제외금액
⑯최종 가능금액 [⑯~⑯합계 -(⑯-3)]	⑯공제한도액 [총급여 수준별 230만원, 280만원, 330만원과 (⑯-1) ×20% 중 적은 금액]	⑯일반 공제금액 (⑯와 ⑯중 적은 금액)	⑯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[⑯ > ⑯인 경우에 ⑯-⑯과 ⑯+⑯+⑯ (한도: 100만원) 중 적은 금액]	⑯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[⑯ > ⑯인 경우에 ⑯-⑯-⑯과 ⑯+⑯+⑯ (한도: 100만원) 중 적은 금액]	⑯도서·공연 등 추가 공제금액 [⑯ > ⑯인 경우에 ⑯-⑯-⑯-⑯과 ⑯+⑯+⑯ (한도: 100만원) 중 적은 금액]	⑯최종 공제금액 (⑯+⑯+⑯)		

## ㊱-3 계산

구분	계산식	㊱-3
$\textcircled{8} \geq (\textcircled{39}-2)$	$(\textcircled{39}-2) \times 15\%$	
$\textcircled{6} + \textcircled{8} + \textcircled{11} + \textcircled{14} + \textcircled{17} \geq (\textcircled{39}-2) > \textcircled{8}$	$\textcircled{8} \times 15\% + \{(\textcircled{39}-2) - \textcircled{8}\} \times 30\%$	
$\textcircled{6} + \textcircled{8} + \textcircled{11} + \textcircled{14} + \textcircled{17} + \textcircled{20} + \textcircled{23} \geq (\textcircled{39}-2) > \textcircled{6} + \textcircled{8} + \textcircled{11} + \textcircled{14} + \textcircled{17}$	$\textcircled{8} \times 15\% + (\textcircled{6} + \textcircled{11} + \textcircled{14} + \textcircled{17}) \times 30\% + \{(\textcircled{39}-2) - (\textcircled{6} + \textcircled{8} + \textcircled{11} + \textcircled{14} + \textcircled{17})\} \times 40\%$	
$\textcircled{6} + \textcircled{8} + \textcircled{9} + \textcircled{11} + \textcircled{12} + \textcircled{14} + \textcircled{15} + \textcircled{17} + \textcircled{20} + \textcircled{23} \geq (\textcircled{39}-2) > \textcircled{6} + \textcircled{8} + \textcircled{11} + \textcircled{14} + \textcircled{17} + \textcircled{20} + \textcircled{23}$	$\textcircled{8} \times 15\% + (\textcircled{6} + \textcircled{11} + \textcircled{14} + \textcircled{17}) \times 30\% + (\textcircled{20} + \textcircled{23}) \times 40\% + \{(\textcircled{39}-2) - (\textcircled{6} + \textcircled{8} + \textcircled{11} + \textcircled{14} + \textcircled{17} + \textcircled{20} + \textcircled{23})\} \times 60\%$	
$(\textcircled{39}-2) > \textcircled{6} + \textcircled{8} + \textcircled{9} + \textcircled{11} + \textcircled{12} + \textcircled{14} + \textcircled{15} + \textcircled{17} + \textcircled{20} + \textcircled{23}$	$\textcircled{8} \times 15\% + (\textcircled{6} + \textcircled{11} + \textcircled{14} + \textcircled{17}) \times 30\% + (\textcircled{20} + \textcircled{23}) \times 40\% + (\textcircled{9} + \textcircled{12} + \textcircled{15}) \times 60\% + \{(\textcircled{39}-2) - (\textcircled{6} + \textcircled{8} + \textcircled{9} + \textcircled{11} + \textcircled{12} + \textcircled{14} + \textcircled{15} + \textcircled{17} + \textcircled{20} + \textcircled{23})\} \times 80\%$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인 :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첨부 서류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	수수료
	1.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(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)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2.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(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→ 조회/발급→연말정산간소화)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)	
		없음

210mm× 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 또는 중질지 80g/m<sup>2</sup>]

## 작 성 방 법

1.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.
2.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, 신용카드·직불카드·기명식선불카드·기명식선불지급수단·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,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  - 가.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
  - 나.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) 이하인 배우자
  - 다.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과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해,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)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) 이하인 사람
3. "① 내·외국인 구분"란은 내국인은 "1", 외국인은 "9"로 표기합니다.
4. "② 관계"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=0, 직계존속=1, 배우자의 직계존속=2, 배우자=3, 직계비속=4로 표기합니다.
5. "자료구분"란의 "국세청 자료"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(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→조회/발급→연말정산간소화)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, "그 밖의 자료"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(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)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.
6.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,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,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, ⑦, ⑧, ⑨, ⑩, ⑪, ⑫, ⑬, ⑭란에서 차감하고 "⑯~⑳ 대중교통이용분" 중 "그 밖의 자료"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
  - 가. ⑥ ~ ⑳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·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.
  - 나. "(⑥ ~ ⑧ 신용카드"란, "(⑨~⑪ 직불·선불카드등"란, "(⑯~⑰ 도서·공연등사용분"란, "(⑮~⑲ 전통시장사용분"란, "(㉑~㉓ 대중교통이용분"란은 '20년 3월분, '20년 4~7월분, 그 외 기간('20년 1~2월, '20년 8~12월)분을 구분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(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) "소득공제대상금액"란 ⑨, ⑩, ⑪, ⑫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.
  - 다. "(㉑~㉓ 현금영수증"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(전통시장사용분·대중교통이용분·총급여 7천 이하인 자의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)을 '20년 3월분, '20년 4~7월분, 그 외 기간('20년 1~2월, '20년 8~12월)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7. ⑫~⑯번 항목의 ■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.
8.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"2.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"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9. "(㉙-1 총급여"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)의 "㉑ 총급여"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10. ㉚ 20년 귀속의 경우 공제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[330만원](#)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, 총급여 7천만원 초과~1.2억원 이하자는 [280만원](#), 총급여 1.2억원 초과자는 [230만원](#)입니다.
11. 도서·공연등 사용분과 도서·공연등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,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·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.